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마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2023. 12. 29.

보건복지부

1. 지침 제정배경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마목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협력 체계를 갖출 것”을 규정한 바,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갖춰야할 정보협력체계의 세부 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근거 법령

- 「의료법」 제3조의4 제1항제3호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제3호 마목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제2조 관련)

3. 인력·시설·장비 등

마.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협력체계를 갖출 것

3. 세부기준

<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 등을 위한 정보협력체계 세부기준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마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환자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하 '진료협력센터'라 한다)을 구성, 6인 이상의 전담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이중 의료인이 3인 이상이어야 한다.
2. 병·의원과의 진료협력 체결을 위한 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3. 초진환자가 진료를 원할 경우 진료협력센터를 통하여 진료예약(환자 의뢰)을 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초진환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1의 가. 초진진찰료 산정환자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4. 의뢰·회송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있어야 하며, 매뉴얼에는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자의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환자 회송 시 회송서는 진료정보(환자 상태, 검사결과, 처방내역, 회송사유 및 내용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포함한다.

4. 상급종합병원의 정보협력체계 운영 시 실적관리 의무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의뢰·회송 발생건수 등 정보협력에 관한 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보협력체계 운영현황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5. 적용일 및 개정방법

- 세부기준 적용일은 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부칙에 따름
- 개정 수요 발생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개정여부를 결정하고 공고함